

의안번호	2202223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4. 8. 20.
추 계 번호	24B228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의2 제4항(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¹⁾ 또는 제3항 ²⁾ 에 따른 영업의 일시 중지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음. 이 경우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보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1조의2 제4항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1) 안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안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세 사유

□ 조류(藻類), 유류 등으로 오염된 하천·호소등에서의 일시적 영업 중지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조류(藻類)³⁾, 유류(油類) 등으로 오염된 수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물놀이 등의 시설에 대한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발생할 조류, 유류 등으로 인해 영업을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의 채취·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시설의 물량과 손실 보상 단가가 필요하나,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 환경부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별표⁴⁾에 따라 조류대발생 등의 경보 발령 시 낚시·수상스키·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가축방목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나, 2001년⁵⁾ 이후 조류대발생 경보 발령 사례가 없어 조류대발생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수산물의 채취·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영업 중지 시 손실 규모 등을 추계하기 위해 필요한 과거 사례 및 관련 현황 자료 등이 부재함
 - － 또한 향후 조류대발생 경보 발령 여부 및 조류 등으로 인해 수산물의 채취·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영업 시설이 중지될 시기, 기간 등을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3) 물속에 살면서 동화 색소를 가지고 독립 영양 생활을 하는 하등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뿌리, 줄기, 잎이 구별되지 않으며, 포자에 의해 번식하고 꽃이 피지 않는다. 몸이 단세포인 것과 다세포인 것이 있고, 수평적 분포는 온도 조건이, 수직적 분포는 빛 조건이 한정 요인이 된다. 남조류, 녹조류, 차축조류, 유글레나류, 갈조류, 황갈조류, 황적조류, 홍조류 등이 있음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4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

1. 조류경보

가. 상수원 구간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조류 대발생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조류대발생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3) 낚시·수상스키·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가축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자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4 중 발취

5) 조류경보제는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01년 충북 청주시의 대청호에서 조류대발생 경보 발령 이후 현재까지 발령 사례가 없음

[표 1] 최근 6년간(2019~2024) 조류경보제 발령일수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합계	492	459	754	778	530	114
관심	417	424	714	572	471	114
경계	75	35	40	206	59	—
대발생	0	0	0	0	—	—

자료: 환경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조류경보제 개요6)

운영대상	총 29개소(상수원 구간 호소·하천 28개소, 친수활동 구간 1개소)		
운영항목	유해남조류세포수(1mL의 물에 들어있는 유해남조류세포수의 총합, cells/mL) *Anabaena, Aphanizomenon, Microcystis, Oscillatoria 속 세포수의 합으로 함		
운영기간	연중 * 친수구간은 운영기관 여건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동절기 등 미운영 가능		
운영지점	취수지점을 중심으로 하천·호소별 1개소 이상 모니터링 * 동일 호소 내에서 여러 지점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자료 중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경보 발령		
발령권자	상수원구간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함	
	친수활동구간	수영, 수상스키, 낚시 등 친수활동의 보호를 위함	
발령기준	상수원 구간	관심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000 세포/mL 이상 1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경계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0,000 세포/mL 이상 1,00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조류 대발생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0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해제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친수활동 구간	관심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20,000 세포/mL 이상 10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경계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해제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2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조사주기	주 1회 이상 (“경계” 이상 발령 시 주 2회 이상)		
결과보고	채수·분석(월요일) → 결과입력(수요일) → 결과승인(목요일) → 대국민공개(금요일)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녹조(조류)정보’을 통해 공개		
조치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별표4에 의거 관계기관별 발령단계별 조치 실시		
기타사항	(대상지점)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98호) (자료공개) 물환경정보시스템 - 녹조(조류)정보 (매주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 중) (매 뉴얼) 조류경보제 운영 매뉴얼(2020.6, 환경부)		

6) 환경부 제출자료